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 납부 시 20% 감경 조치코자 사전통지서와 더불어 정기분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거소) 불명, 이사,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1. 1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제17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대 상 자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시장로 48, 이○○ 외 1,908건(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9. 11. 13. ~ 2019. 11. 30.
5. 상기 대상자 중 사전통지서 미수취자는 공고기간 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교통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053-666-3029)로 할 수 있습니다.
6.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정기분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때부터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씩 최대 60개월간 증가산금이 가산되며, 또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교통과(053-666-3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